

기술인력의 자격기준

1. 정보통신기사·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
 - 1-1. 전자·통신관련학과·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- 1-2. 정보통신·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- 1-3. 정보통신·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- 1-4. 정보통신·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·통신관련,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- 1-5. 전자·통신관련학과,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- 1-6. 정보통신·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·통신관련,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.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·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
 - 2-1. 정보보호 운영·관리 분야
 - 가. 정보보호기술 분야
 - (1) 암호 및 전자서명기술 분야
 - (2) 컴퓨터 보안기술 분야
 - (3) 네트워크 보안기술 분야
 - 나.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·관리 분야
 - 2-2. 정보통신 운영·관리 분야
 - 가. 정보통신기술 분야
 - 나.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·관리 분야
 - 다.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·관리 분야